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군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경비원) 자체점검 및 점검표 제출 요청

1. 전북도청 주택건축과-11317(2015.7.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항을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점검·확인(7월말 기준)하여 주시고, 그 결과(점검표)를 우리시에 '15.8.21(금)까지 제출(Fax 452-882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점검표, 안내문, 팸플렛. 각1부. 끝.

군 산 시 장

수신자 군산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군산시 관내 관리사무소장 배치 단지



주무관 박경민 공동주택관리 팀장 박상열 주택행정계장 박미숙 대결 2015. 8. 3. 건축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건축과-33143 (2015. 8. 3.) 접수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www.gunsan.go.kr

전화번호 063-454-3717 팩스번호 063-452-8828 / kkan0223@korea.kr / 대한민국 공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 공동주택명 : _____ 아파트
- 소재지 : _____ (☎ : _____ Fax : _____)
- 근무인원(경비원) : _____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2. 시·군·구청이나 교육지원청, 협회 등으로부터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자료 받은 적이 있는지?		
3.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는지?		
4.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인원은 몇 명인지?		
5.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여부		
6. 성범죄자 확인 시 조치(해임 등) 사항		
7.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2015년 8월 일

점검자 _____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_____ (서명)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안 내 문 >

◆ 취업제한 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7조 및 제54조

◆ 취업제한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 (단, '06.6.30~'08.2.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년)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대상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조회 의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조회는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인 자 (예정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최초 근무일 이전에 요청해야 함



조회 방법

운영자는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 형사(수사)과에 방문·제출

경찰서는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동보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받아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확인

필요 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장 신분증

*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메이화넷) 왼쪽 하단 - 정책 포커스 '성범죄자 취업제한' 안내 자료 참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는 누가 하나요?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제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누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아동·청소년 관계기관의 운영책임자, 종사자 등)

A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포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서,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등이 추가됨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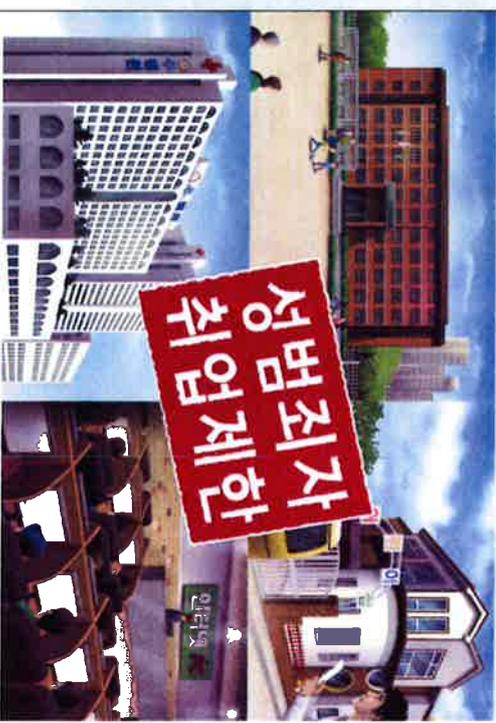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국번 없이 전화 112 또는 117, 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민원실·여성청소년계
• 지문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가능한 기관 : 신고의무제도를 교육수행한 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번호 없이 전화 1577-1391), 지역별 ONE-STOP지원센터(지역번호 없이 전화 1899-3075)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징역이 총량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성범죄자는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성범죄 경력조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그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경찰서에 요청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제3항



Q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범위는?

- A**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 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아동 성학대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 등
 - 영구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Q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범위는?

-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종사자의 범위는 취업자, 취업예정자, 비정규직, 운전기사, 시간제 강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생, 외국인 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Q 여차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나요?

- A** 성범죄 경력조회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종전에 범죄 경력조회를 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가 또 필요한지?

- A**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성범죄 경력조회 외 범죄 경력조회는 다름)

Q 성범죄 경력조회 주기는?

-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는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확인했다리라도, 성범죄는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조회를 요청(매년 상반기)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야영장, 우수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과학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합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문시설, 지역아동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체육시설**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등),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종합 체육시설 등
-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 : 의사(한 의사 포함), 간호사, 조산사**
-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 2013.6.19부터 신규로 추가된 곳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게임시설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반PC방), 복합유동 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 게임제공업(일반 오락실)
- **청소년일을 갖춘 노래연습장**
- **청소년활동기획업소(청소년활동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연기, 무용, 가창 등을 훈련지도하는 사업장)



Q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은?

-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교육장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없이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 후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 A**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관련 시설의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여부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

Q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 A**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즉시 해임
 -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기관 폐쇄 요구
 -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관계 행정 기관장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8조

-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처위반 : 300만원
- * 2차위반 : 400만원
- * 3차위반 : 500만원

